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구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월동 난방비 지원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월동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 기간 및 지원액(안 제3조~제4조)
- 월동 난방비 지원개시(안 제5조)
- 월동 난방비 지원제외, 환수조치, 대상자 관리(안 제6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바깥 출입이 어렵고 주거 환경이 여의치 않은 중증 장애인가구의 난방비 부족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북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 시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집행부에서는 월동 난방비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